

물품 공급 계약서

(주)조이젠 (이하 '판매사' 라고 한다)과 _____ (이하 '공급사' 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성실한 준수를 약속한다.

제 1 조 (총칙)

1. 공급사는 공급사의 생산 또는 수입/유통제품(이하 '상품' 이라 함)을 판매사에게 공급하고, 판매사는 공급사에게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할 권리를 취득한다.
2. 공급사는 판매사의 경영 및 판매 실적 향상을 위하여 판매사의 활동에 대한 지원, 독려할 수 있으며, 공급사는 판매사가 영업상 필요한 정보, 기술 지원을 요구 시 판매사에게 지원한다. 또한 판매사는 공급사의 요청에 따라 판매사의 경영 및 영업 상태를 제공하고, 공급사가 상품 판매 계획에 필요한 시장 정보 등 제반 자료를 제공한다.

제 2 조 (상품 및 서비스 등록)

1. 공급사는 판매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등록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법적 품질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공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2. 공급사는 판매사를 통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할 때 판매사가 제공하는 등록 양식에 따라 상품정보 및 서비스 규정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매사가 정한 양식에 어긋난 정보나 허위정보로 인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사가 진다.
4. 공급사는 판매사가 등록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있어 어떠한 허위, 과장 광고도 해서는 안되며, 문제 발생 시 공급사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5. 공급사는 등록 이후에 상품 및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 등록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즉시 판매사에 통보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사가 진다.

제 3 조 (판매 과정)

1. 판매사는 공급사에게 물품 공급을 요청하고, 공급사는 판매사가 지정한 곳으로 납품할 의무가 있으며 등록된 제품과 납품 제품이 다를 경우 공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2. 직 발송 업체인 경우 판매사는 주문자 정보, 제품 구매내역 등을 공급사에게 지정된 통보 방식에 의해 전달해야 하고 공급사는 24시간 안에 제품을 발송해야 한다.

제 4 조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

1. 공급사는 판매사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공급 당시 타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과 비교하여 최상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저의 가격대를 항상 보장하여야 한다.
2. 판매사는 쇼핑몰에 등록된 공급사의 상품이 다른 쇼핑몰의 가격대에 비해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등록된 상품의 전시 삭제 및 공급업체 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공급사는 판매사에게 가격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공급사와 판매사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 판매사에게 광고비 및 판매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제 5 조 (상품정보의 제공 의무)

1. 공급사는 판매사에게 제공한 상품정보를 항상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판매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공급사는 판매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사 상품들의 가격 추이와 재고 현황을 항상 주시하여야 하며 해당 상품의 판매가에 변동이 있거나 재고 수급 및 배송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판매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공급사가 본 조를 위반하여 판매사에게 상품정보, 가격 변동 및 재고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지체할 시 구매철회, 구매계약의 해지, 또는 그로 인한 비용 및 고객에 대한 배상금 등은 전적으로 공급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4. 공급사가 제공하는 상품 이미지 및 상품 DB의 저작권과 관련해 공급사는 판매사가 운영하는 쇼핑몰 웹사이트에 등록 및 사용 가능 여부를 판매사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급사의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판매사는 저작권 및 사용권에 대한 문제가 없으므로 간주하고 상품등록을 진행하며, 추후 저작권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사가 진다.

제 6 조 (교환, 취소, 반품, 보상)

1. 주문자의 요청에 의한 교환, 주문취소, 반품, 보상에 대하여는 공급사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2. 단순 반품 배송비용은 주문자가 부담(판매사 거래 서비스 기준)하고, 초기 불량으로 인한 교환-배송비용은 판매사의 요청에 의해 공급사에게 청구한다.
3. 직 발송 업체인 경우는 모든 책임이 공급사에게 있으며 판매사의 거래 서비스 기준에 의거하여 교환, 취소, 반품, 보상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4. 공급사의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구매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공급사가 책임을 지며, 미해결로 인해 판매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사는 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5. 판매사의 거래 서비스에 등록된 공급사의 제품에 대해 재고가 없는 상품이거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공급사는 그와 상응한 제품이나 상위 제품으로 대체해 공급한다.
6. 판매사는 공급사에게 상품 판매일로부터 _____ 일 이내의 상품에 대한 반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급사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7. 판매사는 공급사에게 반품을 완료한 후 반품 대금을 당일 지급 처리한다.
8. 공급사는 소비자보호법에 해당되는 사유로 교환 및 반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대금 결제)

1. 공급사는 반드시 법인계좌 또는 대표자 통장을 결제 통장으로 지정해야 한다.
2. 판매사가 구매한 상품 총액과 공급사의 장부상 금액이 일치해야 하며 공급사는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판매사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3. 공급사는 판매사에게 판매 완료한 상품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며 판매사는 주단위로 결제를 한다.
4. 공급사는 판매사가 미판매한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5. 판매사는 공급사에게 미판매 수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6. 판매사와 공급사는 매년 부가세 확정신고 시점(6월, 12월)에 양사 간 거래실적 및 거래잔액에 대한 확인서를 교환한다.
7. 위 결제 조건의 변경 시 공급사와 판매사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결제 방법을 진행하고, 공급사는 판매사에게 해당 물품에 상응하는 보증 보험 등의 검증된 담보를 제공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거래를 진행한다.

제 8 조 (기밀유지)

판매사와 공급사는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해 계약 종료이후에도 그 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비밀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제 9 조 (통지의무 및 권리양도)

본 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서면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 10 조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

1. 본 계약의 유효일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계약 만료 30일 이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사항의 변경, 해지 등에 관한 서면 통지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 11 조 (판매자 등록 및 취소)

1. 공급사는 판매사가 제공하는 등록 양식에 따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거래 은행 명, 거래은행 계좌, 담당자 등 관련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판매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판매사가 정한 기준에 어긋난 정보나 허위정보로 인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사가 진다.
3. 공급사는 판매자 등록 이후에 사업자 등록번호의 변경 및 거래 은행 변경 등을 포함한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즉시 판매사에 통보해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사에게 있다.

제 12 조 (해제 또는 해지)

1. 어느 일방이 본 계약 중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위반 사항의 시정을 최고한후, 상대방의 성실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어느 일방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당사자 일방이 파산신청, 회사정리절차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2) 본 계약에서 정한 공급사의 업무내용이 공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매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3) 당사자 일방에 '서비스' 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런 사유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4) 공급사가 판매사에게 제공하여야 할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5) 가입 시 가입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6) 제품에 하자가 많은 경우

제 13 조 (구매물품 보수 유지 또는 사후서비스 처리)

1. 공급사는 판매사의 쇼핑몰에 등록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이의 제기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성실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사후서비스 기간은 판매사가 고객에게 판매한 시점 이후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3. 사후서비스 기간 내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책임은 공급사가 지도록 한다.
4. 공급사가 물품에 대한 보수 유지 또는 사후 처리 능력을 상실한 경우 판매사는 공급사에 대한 결제대금을 일정 기간 지급 보류할 수 있다.
5. 구매 물품 : _____
6. 월 구매 금액 : _____ 원
7. 공급사는 사후서비스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을 제출해야 한다.
 (공급사는 판매사에게 계약금액 _____ 원의 _____ %에 해당하는
 금액 _____ 원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보험기간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부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 (_____ 일간) *보험기간 완료 시 판매사는 공급사에게 재갱신을 청할 수 있다.)

제 14 조 (서비스의 중단)

판매사는 컴퓨터 등 정보 통신 설비의 보수 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판매사는 공급사에게 통지한다.

제 15 조 (보칙 및 합의 관할)

1. 공급사는 공급하는 상품의 유통을 위하여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 상품전시 전에 이에 따른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상품의 공급과 관련해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법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한 불이행 시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문제나 비용 발생은 공급사가 책임을 진다.
2. 본 계약과 관련해 판매사와 공급사가 체결한 약정서, 별도 합의서, 부대 합의서 등은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상호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유효하게 체결된 문서를 우선으로 한다.
3.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매사와 공급사가 협의하여 해결하거나 상관례에 따른다.
4.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사와 공급사의 일체의 분쟁은 판매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그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판매사

공급사

상호 : (주) 조이젠

상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6-59875

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113-11,
전자타운상가 A동 1,2,3,지하층(한강로3가)

주소

대표자 : 조 호 진

(인)

대표자 :

(인)